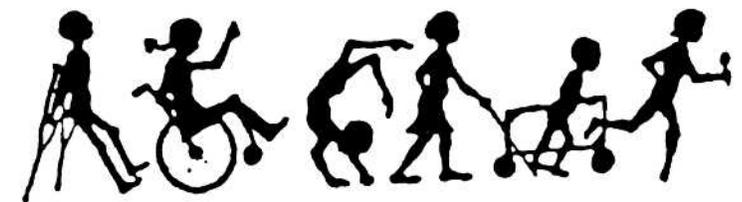


인간 자료실		
등록일	분류기호	
	A 4-1	205

특수교육법 제정을 위한 워크숍



장애인 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 공대위 사무국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137-062
서울시 서초구 방배 2동 467-4
전화 521-5364, 팩스 584-7701

일시 : 1992년 8월 17일 오후 5시
장소 : 한국장애인재활협회 대강당
주최 :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공대위의 활동보고

- 4월 11일 **현행 특수교육진흥법만으로는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는 어렵다고 인지한 공대위는 부모, 교사, 학생, 교수 등을 중심으로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를 위한 특별위원회'(이하 특수교육 특위)를 구성.**
- 4월 18일 **공대위는 '한국특수교육의 문제점과 법률적 해결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공청회를 개최하여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의 일부 개정만으로 장애인의 교육권 확보는 요원하다며 '특수교육법(가칭)'을 새롭게 제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음.**
 이날 교사소위원회는 공청회가 끝난 후 모임을 갖고 교사소위원회의 영역별 (지체, 청각, 시각, 정신, 특수학급 초 중등부) 대표를 구성.
- 4월 24일 **교사소위원회의 임시대표선출 ... 김주영 (안산명혜학교 교사)**
 이후 각 소위는 5월 한달 매주 1회 모임을 가지고 특수교육의 문제점을 짚어내는 작업을 실시.
- 5월 21일 **조기교육교사 교사 소위에 본격 참여...조기교육분과 구성**
- 5월 30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이하 연구소)에서 특수교육특위 모임. 각 특위별 1차 보고서 발표.**
- 6월 10일 **각 소위는 6월 13일 '특수교육의 이념정립을 위한 심포지움' 준비를 위해 모임.**
- 6월 13일 **특수교육법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특수교육의 이념정립이 필요하다는 법률가들의 제안을 받아들여 공대위는 한국장애자재활협회 대강당에서 '특수교육의 이념정립을 위한 심포지움'을 개최.**
 이후 특수교육특위는 매주 1회 모임을 지속적으로 가지고 특수교육진흥법과 특수교육협회안을 검토하며 문제점을 지적.
- 7월 9일 **특수교육 특위는 연구소에서 모임을 가지고 기존의 법안과 문제점을 취합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조기교육분과는 조기교육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 또한 특수교육진흥법내에 있는 교육법 조항을 뽑아내어 개정안을 제시.**
- 7월 17일 **교육법에서 특수교육 관련 조항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개정안 제시.**
- 7월 23일 **특수교육법 제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 ... 특수교육법 제정을 위한 기초적인 틀을 구성.**
- 7월 24일 **23일에 이어 계속**
- 7월 30일 **특수교육법에 대한 총점검**

워크샵 순서

- 사회 : 김정렬(공대위 사무국장)
- 개회 사회자
- 발제..... 김주영 (명혜학교 교사)
- 지정토론..... 박승희 (이화여대 특수교육과 교수)
 김도연 (인덕학교 교사)
- 질의응답
- 폐회..... 사회자

특수교육법 제정을 위한 워크숍

일시 : 1992년 8월 17일 오후 5시

장소 : 한국장애자재활협회 대강당

장애이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특수교육 관련 교육법 개정안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제안 이유

우리나라의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인간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교육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최고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률은 그 뜻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정상인과 장애인의 교육 사이에 많은 차이를 두고 있다. 장애인의 취학의무를 유예하고, 특수교육과 일반 교육을 분리시켜 생각하며, 교사의 자격에 있어서도 현저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러한 예이다.

따라서, 국민의 일원으로서 장애인의 교육권을 만족스럽게 실현하기 위해 다음을 주요 골자로 하는 특수교육 관련 조항들을 수정, 신설, 삭제하는 등의 현행 교육법 개정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주요 골자

1. 장애인의 교육은 중학교 과정까지를 완전 의무교육으로 한다.(제8조의 2)
2. 특수교육 교사의 자격을 일반 교사의 자격과 동등하게 규정하고 구체화하며, 특수교육 요육교사를 새로 명시한다.(제79조 ①)
3. 장애인의 상급학교 진학에 따른 불이익 사례를 막기 위한 근거 조항을 마련한다. (제81조)
4. 각급 학교(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유치원)에 특수학급의 설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제96조의 2, 제102조의 3, 제107조의 6, 제148조의 2)
5. 장애인의 취학을 가로막는 제98조의 유예 조항을 삭제한다.
6. 특수교육과를 설치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 특수학교의 부설을 의무화한다.(제126조 ③)
7. 제5장 제9절 '특수학교' 부분의 조항을 대폭 강화하여 목적, 노력, 대상, 종류, 수업 연한, 전공과 설치, 특수학교 설치 의무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제143조 - 제144조)
8. 특수학급의 교육과정을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한다.(제155조 ②)
9.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과용 도서의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 및 가격사정에 관한 사항을 일반교과와 별도로 정하도록 규정한다.(제157조 ③)

특수교육 관련 교육법 개정안 (1992. 8. 6 1차 시안)

현행법	개정법	개정사유
<p>教育法</p> <p>(1949年 12月 31日) 法律第86號</p> <p>(1991. 12. 31. 법률 제4,474호)</p> <p>第1章 總則</p> <p>第8條【義務教育】①모든 국민은 6年の 初等教育과 3年の 中等教育을 받을 權利가 있다. ②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子女에게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教育을 받게 할 義務를 진다. ③國家는 第2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教育을 實施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施設을 확보함에 必要한 모든 措置를 講究하여야 한다. ④地方自治團體는 그 管轄區域안의 義務教育 學齡對象兒童 全體를 就學시키기 必要한 國民學校와 中學校를 設置·經營하여야 한다. ⑤地方自治團體는 그가 設置한 國民學校와 中學校에 그 管轄區域안의 義務教育 學齡對象兒童 全體를 就學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인정한 地方自治團體와 協議하여 合同으로 國民學校 또는 中學校를 設置·經營하거나 인정한 地方自治團體 또는 國立이나 私立의 中學校에 學齡對象兒童의 一部에 대한 義務教育을 委託하여 實施할 수 있다. (호외 84.8.2)</p> <p>第8條의 2【中等教育에 대한 義務教育】第8條의 規定에 의한 3年の 中等教育에 대한 義務教育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順次的으로 實施한다. (호외 84.8.2)</p>	<p>제 8조의 2(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 제 8조에 의 해 중학교 과정의 특수학교 및 중학교에 설치된 특수 학급을 제외한 3년의 중등교육에 대한 의무교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순차적으로 실시한다.</p>	<p>· 심신에 장애를 지닌 자의 교육은 아동발달의 이론상 0세부터 의무화하는 것이 마땅할 뿐만 아니라, 제 8조의 규정에 따른 국민학교·중학교까지의 교육받을 권리를 완전히 보장함이 바람직하다.</p>

<p>第2章 第3條 (第15條에서 第72條) 削除<91.3.8></p> <p>第4章 教員</p> <p>第79條【教員의 種別과 資格】①교사는 정교사(1급·2급)·준교사·특수학교 교사·교도교사·사서교사·실기교사·양호교사로 나뉘며, 별표 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②교장·교감·원장·원감은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③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조교는 별표 3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거나, 교수 자격심사위원회에서 자격의 인정을 받은 자라야 한다. <호외 74.12.24> ④제 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교원의 자격을 검정하기 위하여 교육부에 교원자격검정위원회가 발족한다. (호외 90.12.27) ⑤교수자격심사위원회 및 교원자격검정위원회의 조직·권한·운영과 교원의 자격검정 및 자격인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교원의 임용·복무·보수·연금 기타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호외 72.12.16.</p> <p>第5章 教育機關</p> <p>第1節 學校</p> <p>第81條【學校의 種類】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信仰, 性別, 社會的身分, 經濟的地位 등에 의한 差別이 없이 그 能力에 따라 均等하게 教育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學校를 設置한다. <호외 77.12.31, 81.12.31></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國民學校·中學校·高等學校·大學 2. 教育大學·師範大學 3. 專門大學·放送通信大學·開放大學 4. 技術學校·高等技術學校 5. 公民學校·高等公民學校 6. 特殊學校 7. 幼稚園 8. 各種學校 	<p>제 79조(교원의 종별과 자격) ①교사는 정교사(1급·2급), 준교사, 특수교육 정교사(1급·2급), 특수교육 준교사, 특수교육 요육교사, 교도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양호교사,로 나누되 별표 1과 별표 1의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교육부장관이 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라야 한다. ②·③·④·⑤·⑥은 좌동</p> <p>제 81조(학교의 종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신앙, 성별, 사회적 신분, 장애 유무, 경제적 지위 등에 의한 차별이 없이 그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게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학교를 설치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국민학교·중학교·고등학교·대학 2. 교육대학·사범대학 3.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개방대학 4. 기술학교·고등기술학교 5. 국민학교·고등국민학교 6. 특수학교 7. 유치원 8. 각종학교 	<p>· ①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는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모두 갖고 있으므로 현행의 '특수학교 교사'라는 명칭은 '특수교육 교사'로 바뀌어야 한다. ②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의 자격이 일반 교사의 자격과 형평이 맞지 않아 재교육의 기회를 갖지 못하며, 승진이나 처우 등에서 현저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③특수학교에는 치료교육을 전담하는 특수교육 요육교사가 있으므로 이를 새롭게 규정하여야 한다.</p> <p>· 장애를 이유로 상급 학교의 진학에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를 막을 수 있는 근거 조항으로 '장애 유무'를 삽입시켜야 한다.</p>
---	---	--

현행법	개정법	개정사유
<p>第2節 國民學校</p> <p>第96條 [國民學校에 就學시킨 義務] ①모든 國民은 그 保護하는 子女가 滿6歲가 된 다음날 이후의 最初學年初로부터 滿12歲가 되는 날이 屬하는 學年末까지 그 子女를 國民學校에 就學시키야 한다. <改正 84.8.2></p> <p>②第1項의 義務實施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68.11.15></p> <p>第98條 學齡兒童이 不具, 廢疾, 病弱, 發育不完全 또는 其他 不得已한 事由로 因하여 就學하기 不能한 境遇에는 大統領令의 定하는 비에 依하여 그 義務를 免除 또는 減價할 수 있다.</p> <p>第3節 中學校</p> <p>第102條의 2 [中學校에 就學시킨 義務] ①모든 國民은 그가 保護하는 子女가 國民學校을 卒業한 다음 學年初로부터 滿15歲가 되는 날이 속하는 學年末까지 그 子女를 中學校에 就學시키야 한다.</p> <p>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義務의 實施에 關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新設 84.8.2)</p> <p>第4節 高等學校</p> <p>第107條의 5 [教育實施 及 授業을 妨害하는 爲의 금지] 第103條의 5 및 第103條의 6의 規定은 第107條의 4의 規定에 의한 特別學級 및 高等學校에 이를 準用한다. (新設 76.12.31)</p> <p>第5節 大學</p> <p>第126條 ①教育을 實地로 研究實習하기 爲하여 教育大學에 國民學校系, 師範大學에 國民學校, 中學校와 高等學校을 附設한다.</p> <p>②特別한 事實在 있을 때에는 公立의 國民學校, 中學校, 高等學校을 附設할 수 있다. 中學校, 高等學校로 代用할 수 있다.</p> <p>③必要한 境遇에는 教育大學, 師範大學에 功修班, 特殊學校, 技術學校 또는 其他 研究機關을 附設할 수 있다.</p>	<p>제 96조의 2 국민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학교에 국민학교 취학연령에 달한 장애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제 98조 삭제</p> <p>제 102조의 3 중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학교에 국민학교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장애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제 107조의 6 고등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학교에 중학교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장애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제 126조 ①·②는 좌동 ③필요한 경우에는 교육대학, 사범대학에 유치원, 기술학교 또는 기타 연구기관을 부설할 수 있다. ④교육을 실시로 연구실습하기 위하여 특수교육과를 설치한 교육대학 및 사범대학에 관련된 특수학교를 부설한다.</p>	<p>· 국민학교에 특수학급의 설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p> <p>· 그동안 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사실상 가로막아 온 독소조항이므로 삭제하여야 한다.</p> <p>· 중학교에 특수학급의 설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p> <p>· 고등학교에 특수학급의 설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p> <p>· 특수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양성하는 과정에서 교육 대상에 대한 보다 실제적인 이해와 교수 방법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육실습을 할 수 있는 부설학교가 있어야 한다.</p>
<p>第6節의 2 專門大學</p> <p>第6節의 3 放送通信大學과 開放大學</p> <p>第7節 技術學校와 高等技術學校</p> <p>第8節 公民學校와 高等公民學校</p> <p>第9節 特殊學校</p> <p>第143條 [目的] 特殊學校는 弱智兒童과 聾啞人에게 功修班·國民學校·中學校·高等學校에 準한 教育과 그 實生活에 필요한 知識 및 技能을 가르침을 目的으로 한다. <改正 81.2.13></p>	<p>제143조(목적) 특수학교는 중증의 장애를 지닌 장애인들에게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교육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 143조의 2 특수학교 교육은 제 143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목표를 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2. 3. 4. 5. 6. 7. <p>제 143조의 3(특수학교 취학 대상) 특수학교 취학 대상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시각 장애인 2. 청각 장애인 3. 정신 지체인 	<p>· 특수학교의 설치 목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한다.</p> <p>◎ '특수학교'를 규정하고 있는 절을 다른 절과의 형평에 맞도록 하며, 특수학교의 종류와 전문부설치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기 위해 제 143조의 2부터 6까지 대쪽 신설한다.</p> <p>· 특수학교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교육 목표를 규정하여야 한다.</p> <p>· 특수학교의 취학 대상자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한다.</p>

현행법	개정법	개정사유
<p>제 144조 市·道는 特殊學校를 各 12以上 設置하여야 한다. <改正 72.12.16.88.4.6></p>	<p>4.지체 장애인 5.정서 장애인</p> <p>제 143조의 4(특수학교의 종류) ①특수학교는 제 143조의 3에 해당하는 자의 장애유형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설치할 수 있다. 1.시각 장애인을 위한 학교 2.청각 장애인을 위한 학교 3.정신 지체인을 위한 학교 4.지체 장애인을 위한 학교 5.정서 장애인을 위한 학교 ②지역적인 형편에 따라 제 1항의 두 가지 이상의 종류를 포함하는 학교를 설치할 수 있다. ③학교의 명칭에는 장애유형을 나타내는 표현을 쓸 수 없다.</p> <p>제 143조의 5(특수학교의 수업 연한) 특수학교의 수업 연한은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각각의 수업 연한에 준한다.</p> <p>제 143조의 6(전공과 설치) ①특수학교에는 고등학교 동등이상의 학력이 인정되는 제 143조의 3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문 직업기술을 교육하기 위하여 수업연한 1년 이상의 전공과를 둘 수 있다. ②전공과의 설치·운영·종류 및 기타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p> <p>제 144조(특수학교 설치 의무) 각 시·도는 장애의 유형을 고려한 특수학교를 설립하여야 한다.</p>	<p>· 특수학교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②항과 ③항은 이미 실시되고 있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p> <p>· 특수학교의 수업 연한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p> <p>· 장애인의 졸업 후의 사회 경제적인 자립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전문 직업기술을 교육하는 전공과의 설치를 법적으로 가능하게 한다.</p> <p>· 학령기에 있는 장애인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불편없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수의 특수학교 설치가 필요하다.</p>

<p>第 145條 [特殊學級] 國民學校 또는 中學校는 필요한 경우에 사용가능한 建物을 활용하여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學生을 위하여 特殊學級을 둘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肢體不自由者 2. 情緒障礙者 3. 精神薄弱者 4. 聽覺障礙者 5. 視覺障礙者 6. 言語障礙者 7. 기타의 障礙者 [全改 88.4.6] <p>第 10 節 幼稚園</p> <p>第 148條 (入學年齡) 幼稚園에 入學할 수 있는 者は 滿3歲부터 國民學校就學初期에 達하기 까지의 幼兒로 한다.</p> <p>第 11 節 各種學校</p> <p>第 6 章 授 業</p> <p>第 7 章 學科와 教科</p> <p>第 155條 [學科·教科] ①大學·師範大學·教育大學·專門大學·各種學校를 제외한 各學校의 學科 및 教科는 大統領令으로, 教育課程은 教育部長官이 정한다. <改正 81.2.13.90.12.27> ②加除 <77.12.31> ③教科에는 必須科目外에 選擇科目을 둘 수 있다. ④中學校는 全教科의 15 퍼센트 以上을, 人文系 高等學校는 全教科의 10 퍼센트 以上을 實業科目으로 선택하여 學年 各自로 하이금 1人1技를 習得케 하여야 한다.</p> <p>第 157條 ①大學·教育大學·師範大學·專門大學을 除外한 各學校의 教科用圖書는 教育部가 著作権을 가졌거나 檢定 또는 認定한 것에 限한다. <改正 70.1.1.74.12.24.77.12.31> ②教科用 圖書의 著作·檢定·認定·發行·供給 및 價格査定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改正 77.12.31></p>	<p>제 145조 삭제</p> <p>제 148조의 2 유치원의 장은 필요한 경우 당해 유치원에 제 148조의 입학자격이 있는 장애 유아가 교육받을 수 있는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p> <p>제 155조 ①좌동 ②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에 설치된 특수학급의 교육과정은 별도로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③·④는 좌동</p> <p>제 157조 ①·②는 좌동 ③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교과용 도서의 저작·검정·인정·발행·공급 및 가격사정에 관한 사항은 그 특수성을 감안하여 일반교과와 구분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p>	<p>· '특수학급'에 관한 부분적인 조항이므로 제 96조의 2와 제 102조의 3, 제 107조의 6, 제 148조의 2로 대체하며, 본 조항은 삭제한다.</p> <p>· 유치원에 특수학급의 설치를 구체적으로 규정한다.</p> <p>· 특수학급의 교육과정은 교육 대상을 감안할 때 일반 교육과정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치 못하므로 특수학교 교육과정과 더불어 별도로 정해야 한다.</p> <p>·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의 교과용 도서는 그 대상의 장애별, 능력별 특성 때문에 일반교과용 도서와 관리하기가 곤란하므로 별도로 정해야 한다.</p>
--	--	---

[별표 1]

교사 자격 기준

학교별	중등학교	국민학교	유치원
정 교사 (1급)	1.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중(2급)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자로서 1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 2.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중을 소지하지 아니하고 교육대학원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이 있는 자. 3. 중등학교 정교사(2급) 자격중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4. 교육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또는 전문학교의 교수 부교수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1. 국민학교 정교사(2급) 자격중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국민학교 정교사(2급) 자격중 소지자로서 교육경력이 3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 교육과를 졸업한 자.	1. 유치원 정교사(2급) 자격중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국민학교 정교사(1급) 자격중을 가진 자.
정 교사 (2급)	1. 사범대학 졸업자. 2. 교육대학원 또는 문교부장관이 지정한 대학원 교육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임시교원 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2. 교육대학 졸업자. 2. 사범대학 졸업자로서 초등교육과정을 전공한 자. 3. 국민학교 준교사 자격중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1. 대학(초급대학 및 전문학교를 포함한)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보육과 교직학점을 이수한 자. 2. 유치원 준교사 자격중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3. 국민학교 정교사(2급) 자격중을 가진 자.

4. 대학에 설치하는 교육과 졸업자.	1. 중등학교 교사자격중 소지자로서 필요한 보수교육을 받은 자.		
5. 대학 졸업자로서 재학 중 소정의 교직과 학점을 이수한 자.	5. 초급대학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소자격으로 하는 임시 교원 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6.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중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6. 국민학교 준교사 자격중 소지자로서 교육 경력이 2년 이상이고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를 졸업한 자.		
7. 국민학교의 준교사 이상의 자격중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한 자.			
8. 대학졸업자로서 중등학교정교사(2급)의 자격검정에 합격한 자.			
9. 교육대학, 실업고등전문학교 또는 전문학교의 조교수 전임강사로서 2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준 교사	1.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초급대학을 제외한다)의 공업, 수산, 행양 및 농공계 학과를 졸업한 자. 2. 중등학교 준교사 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	1. 국민학교 준교사 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 2.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를 입고자격으로 하는 임시교원 양성기관을 수료한 자 3. 방송통신대학 초등교육과 졸업자.	1. 유치원 준교사 자격 검정에 합격한 자. 2. 국민학교 준교사 합격중을 가진 자.
교도교사	생	략	
사서교사		내	용 생 략
실기교사		내	용 생 략
양호교사		내	용 생 략

학교별	중등학교(중·고등부)	국민학교(초등부)	유치원(유치부)
정교사 (1급)	1. 중등학교 특수교육 정교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였거나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특수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특수교육 경력이 있는 자. 2. 중등학교 특수교육 정교사 (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특수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단,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였거나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특수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는 재교육 면제함).	1. 국민학교 특수교육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였거나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특수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특수교육 경력이 있는 자. 2. 국민학교 특수교육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특수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단,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였거나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특수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는 재교육을 면제함)..	1. 유치원 특수교육 정교사(2급)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였거나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특수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로서 1년 이상의 특수교육 경력이 있는 자. 2. 유치원 특수교육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특수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단,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였거나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특수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는 재교육을 면제함). 3. 국민학교 특수교육 정교사(1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소정의 유치원 교사 양성 강습을 받은 자
정교사 (2급)	1. 대학의 특수교육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였거나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특수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중등학교 특수교육 준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특수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1. 대학의 특수교육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국민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국민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였거나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특수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국민학교 특수교육 준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특수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1. 대학의 특수교육과 졸업자로서 재학중 유치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교육대학원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였거나 문교부장관이 지정하는 대학원 특수교육학과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3. 국민학교 특수교육 정교사(2급) 자격증 소지자로서 소정의 유치원 교사 양성강습을 받은 자. 4. 유치원 특수교육 준교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2년 이상의 특수교육 경력을 가지고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준교사	중등학교 특수교육 준교사 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국민학교 특수교육 준교사 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유치원 특수교육 준교사 자격검정고시에 합격한 자.
요목 교사	대학의 치료교육과 졸업자로서 특수교육 요목교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		

비고 : 특수교육 교사는 특수학교나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유치원의 특수학급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학교별	중등학교	국민학교	기술학교	특수학교	幼稚園
교장 (교감)	1. 中等學校의 校長 資格證을 가지고 3년 이상의 教育 經歷과 所定의 再教育을 받은 者 2. 學識·德望이 높은 者로서 敎員 資格 檢定 委員會의 推薦에 의하여 文敎部 長官의 認可를 받은 者. 3. 教育大學·專門大學의 學長으로 勤 務한 經歷이 있는 者	1. 國民學校의 校長 資格證을 가지고 3년 이상의 教育 經歷과 所定의 再教育을 받은 者 2. 學識·德望이 높은 者로서 敎員 資格 檢定 委員會의 推薦에 의하여 文敎部 長官의 認可를 받은 者	1. 中等學校 校長 資格證을 받은 者 2. 實技敎師 資格證을 가지고 9년 이상의 教育 經歷과 所定의 再教育을 받은 者	1. 특수학교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대학의 특수교육과 교수, 부교수로서 5년 이상의 교육경력이 있는 자. 3. 중등학교 또는 국민학교 교장 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1. 幼稚園의 園長 資格證을 가지고 3년 이상의 教育 經歷과 所定의 再教育을 받은 者 2. 學識·德望이 높은 者로서 敎員 資格 檢定 委員會의 推薦에 의하여 文敎部 長官의 認可를 받은 者
교장 (원감)	1. 中等學校正敎師 (1級) 資格證을 가지고 3년 이상의 教育 經歷과 所定의 再教育을 받은 者 2. 中等學校正敎師 (2級) 資格證을 가지고 6년 이상의 教育 經歷과 所定의 再教育을 받은 者 3. 教育大學의 敎授·副敎授로서 6년 이상의 教育 經歷이 있는 者	1. 國民學校正敎師 (1級) 資格證을 가지고 3년 이상의 教育 經歷과 所定의 再教育을 받은 者 2. 國民學校正敎師 (2級) 資格證을 가지고 6년 이상의 教育 經歷과 所定의 再教育을 받은 者	1. 中等學校 校監 資格證을 가진 者 2. 實技敎師 資格證을 가지고 6년 이상의 教育 經歷과 所定의 再教育을 받은 者	1. 특수교육 정교사 (1급)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특수교육 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받은 자. 2. 중등학교 또는 국민학교 교감 자격증 소지자로서 교육대학원 또는 대학원에서 특수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1. 幼稚園正敎師 (1級) 資格證을 가지고 3년 이상의 教育 經歷과 所定의 再教育을 받은 者 2. 幼稚園正敎師 (2級) 資格證을 가지고 6년 이상의 教育 經歷과 所定의 再教育을 받은 者

참고

1. 이 표중 國民學校는 公民學校 또는 이와 同等程度의 各種學校를, 中等學校는 中學校, 高等學校, 高等公民學校 또는 이들과 同等程度의 各種學校를, 技術學校는 高等技術學校를 포함한다.
2. 校長·校監·園長·原監·敎育長·獎學官·獎學士·敎育研究官·敎育研究士의 經歷年數는 敎育 經歷年數로 볼 수 있다.
3. 이 표중 專門大學의 學長에는 尙건의 專門學校·實業高等專門學校의 校長과 副學長을 포함한다.

특수교육법 제정의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

제안이유

1979년부터 시행되어온 특수교육진흥법은 우리나라 특수교육의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고, 열악하기 그지 없었던 장애인 교육의 환경을 개선하는데 크게 이바지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특수교육에 대한 욕구의 증대와 사회 구조의 변동에 따른 전반적 인식의 변화로 이 법의 기능은 그 한계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기존의 틀을 유지한 부분적인 법 개정만으로는 이러한 시대적 변화를 따를 수가 없게 되었다. 특수교육진흥법을 제정한 동기가 특수교육의 진흥 그 자체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법의 시행으로는 질적인 측면에서의 진정한 특수교육권의 확보라는 우선과제를 충족시킬 수 없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나날이 급증하는 중증 장애아들에 대한 조기교육에서부터 의무교육의 확보 및 통합교육, 개별화교육등 다가오는 2,000년대의 선진특수교육의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천을 위하여 새로운 특수교육체제와 실천방안을 담은 "특수교육법"을 제정토록 하기 위하여 이 시안을 발표하게 되었다.

주요골자

1. 특수교육의 목적과 용어를 새롭게 정의한다.
2. 특수교육권의 보장과 관련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를 구체화한다.
3. 특수교육 권자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0세부터의 조기교육을 실시한다.
4. 조기교육부터 중학교 교육까지를 의무교육으로 한다.
5. 고등학교 교육과 전공과(이법에서 새로 신설)는 무상교육으로 한다.
6. 특수교육 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연수교육을 실시한다.
7. 국, 공립수준의 사립특수교육 기관 보조 구체화한다.
8. 특수교육권자에 대한 각급학교의 불이익 처분 금지 구체화한다.
9. 순회교육의 실시 규정한다.
10. 특수교육권자 판별등을 위한 특수교육 대상 판별위원회를 설치한다.
11. 조기교육원(이법에서 새로 신설)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12. 특수학급의 목적, 설치, 허가, 대상 등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다.
13. 개별화 교육을 실시한다.
14.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을 강화한다.
15. 부모교육의 실시를 의무화한다.
16. 통합교육을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17. 국립 특수교육연구원을 설립하여 특수교육분야의 연구한다.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제안하는

특수교육법(안)

(1992. 8. 6 1차 시안)

제1장 총 칙

제1조(특수교육의 목적) 이 법의 목적은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그 교육에 필요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와 특수교육에 필요한 여러가지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과학적인 특수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교육법 제1조에서 규정한 홍익인간의 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것이다.

제2조(용어의 정리)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특수교육"이라 함은 특수교육기관에서 이 법 제4조에 규정된 특수교육권자에게 그들의 특성과 욕구에 따라 실시하는 교과교육과 치료교육, 진로 및 직업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기관"이라 함은 이 법 제4조에 규정된 특수교육권자에게 특수교육을 실시하는 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전문부등의 과정을 교육하는 각 급 특수학교와 영아 및 유아교육을 담당하는 조기교육원 및 특수학급을 말한다.
3. "조기교육"이라 함은 법 제4조에 해당하는 자 가운데 0세 부터 학령전까지의 연령에 속하는 아동에게 실시하는 교육을 말한다.
4. "특수교육교원"이라 함은 특수교육교원 자격을 소지하고 특수교육기관에서 제4조에 규정된 특수교육권자에게 직접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를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특수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특수교육 종합계획의 수립
2. 특수교육기관의 설치 및 시설, 설비의 확충과 정비
3. 특수교육교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적절한 시책의 강구
4. 특수교육 담당교원의 양성과 연수교육.

5. 특수교육권자의 진단, 판별 및 특수교육기관에의 배치
6. 특수교육 자문위원회의 설치
7. 공공시설의 편의시설 완비
8. 특수교육권자의 취학 및 취업지도
9. 특수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연구, 개선
10. 특수교육 교재, 교구 및 보장구의 연구, 개발
11.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 개발과 시설 및 설비지원을 위한 계획의 수립
12. 기타 특수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시책을 강구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를 타에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4조(특수교육권자)

① 특수교육권자는 "특수교육대상판별위원회"가 이 법 제16조의 기준에 의하여 판별한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시각장애인
2. 청각장애인
3. 정신지체인
4. 지체장애인
5. 정서장애인
6. 언어장애인
7. 학습장애인
8. 기타의 장애인

② 특수교육권자의 교육연령은 0세 부터로 한다.

제5조(권리교육)

① 제4조에 해당하는 자는 중학교 과정 이하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제4조에 해당하는 사람을 보호하는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사람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제6조(무상교육) 제4조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고등학교 및 전공과의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제7조(불이익 처분의 금지 및 편의의 제공)

① 각급 학교의 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고자 할 경우 그 가 장애인임을 이유로 입학지원의 거부 및 입학거부등 불이익한 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각급 학교의 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학교에 입학하기 위하여 입학 지원을 하였을 경우 입학지원과 관련된 부분에 그가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은 제4조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경우 체육 등 모든 수업과 학교생활 전반에 불편이 없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순회교육)

① 제4조에 규정된 특수교육권자 가운데 제2장에 규정된 판별위원회에서 운동기능에 심한 장애를 입어 특수교육기관 및 일반교육기관에서의 교육이 불가능하다고 판별된 자라고 하더라도 특수교육을 받을 권리를 잃지 않는다.

에게 특수교육교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지도하는 교육을 말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하여 순회교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제9조(교원의 자질향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교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연1회 이상 교육부 장관이 지정하는 연수교육기관에서 연수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위 연수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사립특수교육기관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특수교육기관에 대하여 그 운영비, 시설비, 실험실습비, 직업교육에 필요한 시설비, 통학버스 운영비, 기숙사 운영비, 교직원의 봉급 및 기타 특수교육에 필요한 모든 운영비를 국·공립특수교육기관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보조할 의무가 있다.

제2장 특수교육위원회

제11조(목적) 특수교육권자를 조기에 정확하게 판별하여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른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고만 한다)를 설치한다.

제12조(조직)

① 교육부 장관 산하에 중앙위원회를 둔다.

② 서울특별시, 도 및 각 직할시에는 "시·도위원회"를 둔다.

③ 각 시, 군, 구에는 "시, 군, 구 위원회"를 둔다

제13조(구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임무)

①시,군,구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권자의 진단 및 판별
2. 특수교육권자의 해당 교육기관 배치
3. 특수교육기관 및 일반교육기관의 판별의뢰에 따른 판별
4. 학부모 상담

②시,도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권자 또는 그 보호자로 부터 시,군,구 위원회의 판단에 불복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재판별
2. 시,군구 위원회의 판별 및 배치에 대한 적정성 심의
3. 특수교육권자의 조기 발견을 위한 방안의 강구

③중앙 위원회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특수교육과 관련된 종합대책의 수립
2. 정확한 진단 및 판별을 위한 종합대책 수립
3. 시,도위원회의 결정에 대한 재심의

④특수교육권자 및 그 보호자는 시군구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6개월 내에 상급위원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특수교육권자 및 그 보호자는 시군구위원회 및 시도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이의 신청이 있는 날로 부터 2개월 내에 재결정 여부를 확정시켜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판별기준)

①특수교육권자 해당여부에 관한 판별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위 판별기준 및 방법을 정함에 있어 중앙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정한다.

제16조(부모의 참여)

- ①위원회는 판별의 절차 및 결과를 부모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②위원회의 판별에 따른 배치는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가 없이 할 수 없다.

제3장 특수교육기관

제1절 조기교육원

제17조(목적) 조기교육원은 제4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조기교육을 통하여 심신발달을 도모하여 장애의 정도를 감소시키며, 가진 능력을 발휘시키기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제18조(설립, 경영)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기교육원을 설립, 경영할 의무가 있다.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기교육원을 학교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에 위탁하여 경영할 수 있다.

제19조(설립허가등)

- ①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조기교육원을 설치, 운영할 수 없다.
- ②조기교육원을 운영하는 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문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0조(폐쇄명령) 조기교육원을 경영하는 자가 제3장 제1절 또는 그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문교부 장관은 그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21조(지휘, 감독) 조기교육원은 문교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제22조(장학지도) 각 시도 교육감은 당해 조기교육원에 대하여 장학지도를 하여야 한다.

제23조(취원대상 연령)

- ①조기교육원에 취원할 수 있는 자는 제4조에 해당하는 0세 부터 학령전까지의 아동으로 한다.
- ②조기교육원은 취원대상의 연령에 따라 유아부와 유치원을 두되 0세 부터 2세까지는 유아부에서 만3세 부터 학령전까지는 유치부에서 교육한다.

제24조(조기교육 교직원의 종별과 자격)

①조기교육원에는 원장과 교사를 두되 교사 5인 이상의 경우에는 원감 및 사무직원을 두어야 한다.

②원장, 원감, 교사는 교육법에 의한 특수교육유치원의 원장, 원감, 교사자격을 가진자로 한다.

제25조(교직원의 임무)

- ①원장은 조기교육원의 원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하며 당해 조기교육원을 대표한다.
- ②원감은 원장의 명을 받아 원무를 수행하고 원아를 교육하며 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리한다.
- ③교사는 원아를 교육한다.

제26조(교직원의 임면)

-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 경영하는 조기교육원의 교직원은 교육감이,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 경영하는 조기교육원의 교직원은 당해 조기교육원의 설립자 또는 경영자가 임명한다.
- ②허가를 받아 조기교육원을 경영하는 자가 교직원을 임면한 때에는 지체없이 문교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복무)조기교육원의 원장, 원감, 교사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법과 다른 법에 따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특수학교

제28조: 특수학교에 관한 사항은 교육법 제5장 9절에 의한다.

제3절 특수학급

제29조(목적) 특수학급은 제4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최대한의 통합교육환경을 조성하여 유치원,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교육과 실생활에 필요한 지식 및 기능을 교육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0조(특수학급의 설치)

- ①특수학급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교육법 제96조의 2, 제102조의 3, 제107조의 6, 제148조의 2에 의한다.
- ②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장은 18학급당 1학급 이상의 특수학급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31조(특수학급의 종류)

① 특수학급은 장애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하여 다양하게 설치하되 지역의 여건도 함께 고려하여 문교부령으로 정한다.

② 장애의 유형에 따른 특수학급은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1. 시각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
2. 청각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
3. 정신 지체인을 위한 특수학급
4. 정서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
5. 학습 장애인을 위한 특수학급
6. 기타의 특수학급

③ 장애의 정도에 따른 특수학급은 다음과 같이 둘 수 있다.

1. 전일제 특수학급
2. 시간제 특수학급
3. 자료실
4. 특별 지도실
5. 상담실

제4절 개별화 교육

제32조(목적) 개별화 교육은 제4조에 해당하는 자에게 각 개인의 지능, 학습능력, 정서, 학습습관, 생활유형 등을 고려하여 학습목표, 학습내용, 학습방법, 학습환경 등을 달리하여 교육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3조(개별화 교육 계획)

- ① 특수교육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재학하는 자의 개별화 교육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② 개별화 교육 계획은 부모나 보호자의 참여와 동의로 수립되어야 한다.
- ③ 개별화 교육 계획의 수립에 따른 절차·기간 및 계획서의 양식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4조(개별화 교육 계획 위원회)

- ① 특수교육 기관의 장은 당해 기관에 재학하는 자의 개별화 교육 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개별화 교육 계획 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개별화 교육 계획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문서화 의무) 담당교사는 연 1회 개별화 교육 계획서와 그에 따른 평가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각각 개별화 교육 계획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절 진로교육 및 직업교육

제36조(진로교육)

① 특수교육 기관은 학생들이 만족스럽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진로에 대한 방향을 세우고 자신의 직업을 선택하며, 그에 대한 준비를 하도록 진로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진로교육의 대상과 과정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제37조(직업교육)

① 특수교육 기관은 특수교육권자가 그 능력에 따라 장차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과정 이상의 전문과정을 설치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학교에 직업훈련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의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소요 경비를 타에 우선하여 지급해야 한다.

③ 직업교육의 종류와 과정은 교육부 장관이 정한다.

④ 직업훈련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6 절 특수교육 시설·설비

제38조(목적) 특수교육 시설·설비는 특수교육권자들이 장애별·정도별로 효율적인 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수교육 기관에 설치한다.

제39조(설치 기준) 특수교육 시설·설비의 설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7 절 장학금과 학비 감면 등

제40조(장학금 지급)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 기관에 재학하는 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41조(학비 감면) 각급 학교의 장은 특수교육권자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을 경우 입학금·수업료 기타 납입금을 감면해 줄 수 있다.

제42조(부모교육) 각급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 기관의 장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권자의 부모를 대상으로 부모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통합교육을 위한 노력) 각급 학교의 장과 특수교육 기관의 장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특수교육권자의 정상화를 위한 통합교육에 힘써야 한다.

제44조(건강 진단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특수교육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학생들의 건강 진단 및 생활기능회복 정도의 판단(이하 '교정'이라 한다.)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 진단 및 판정의 결과 교육대상자가 있을 경우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5조(국립 특수교육 연구원) 특수교육의 종합적인 발전을 위하여 장애별 전문 연구는 물론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조기교육원 등에 필요한 교육과정 및 교수 계획의 개발 연구, 각종 교재·교구의 개발, 특수교육 교원 연수 등을 담당하는 국립 특수교육 연구원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제 8 절 벌칙

제46조(폐쇄 명령 등 위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의무교육위반자)
2. 제9조(불이익처분의 금지)
3. 제19조(부허가 조기교육원)
4. 제20조(폐쇄명령)
5. 제21조(지휘 감독위반)
6. 제26조(입면보고해태)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조(폐쇄명령위반)

2. 제21조(지휘, 감독위반)

3. 제22조(장학지도위반)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시도 교육감이 부과징수한다.

③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교육감은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 절차법에 의한 과태료 재판을 한다.

⑤ 제 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 이 법의 시행일자

제2조 용어의 변경(특수교육권)

제3조(시설의 경과조치)